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07

발의연월일: 2020. 8. 12.

발 의 자:임이자·김형동·추경호

박대수 · 한기호 · 이명수

권명호 · 한무경 · 이종성

송언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 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(안 제15조제1항).
- 나.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- 다.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·치유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,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4 신설).
- 라.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9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2항 중 "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"를 "실태조사"로 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4(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, 상담,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(이하 "상담치유센터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상담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학교폭력 피해관련 조사
 - 2. 학교폭력 피해관련 상담·치유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 - 3.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교육
 - 4. 전문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
 - 5. 그 밖에 학교폭력 피해의 상담ㆍ치유에 필요한 사업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상담치유센터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
다.

제15조제1항 중 "학기별"을 "분기별"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 ① 교육부장 관은 학교폭력의 예방,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 야 한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(이하 "지상파방송사업자"라 한다)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 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협 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0조의 제목 중 "신고의무"를 "신고의무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학교 등"을 "학교, 수사기관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진행 중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폭력행위 제지, 가해학생 · 피해학생의 분리
- 2. 긴급치료 필요 시 학생의 의료기관 인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존 설치된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한 전문기관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	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	<u><</u> 삭 제>
한 조사, 상담, 치유프로그램	
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	
치・운영할 수 있다.	
⑩·⑪ (생 략)	⑩·⑪ (현행과 같음)
⑩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	12
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	
실시하는 학교폭력 <u>실태조사</u>	실태조사 <u>-</u> -
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	
<u>설치</u>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
령으로 정한다.	
<u><신 설></u>	제11조의4(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
	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학교
	폭력 등에 관한 조사, 상담, 치
	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과적
	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폭
	력상담치유센터(이하 "상담치
	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
	하여야 한다.
	② 상담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
	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① 지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·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(학교폭력의 개념·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)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1. 학교폭력 피해관련 조사	
2. 학교폭력 피해관련 상담·ㅊ	.]
유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빝	<u>}</u> -
<u>· 보급</u>	
3.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꼭	<u>E</u>
력 전문상담교사의 교육	
4. 전문의료기관 등과의 연기	
<u> 현</u>	
5. 그 밖에 학교폭력 피해의 신	<u>}</u>
담·치유에 필요한 사업	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	}- }
담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어	
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투	1
를 지원할 수 있다.	
④ 상담치유센터의 설치·운영	3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<u>)</u>
<u>로 정한다.</u>	
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①)
	_
	-
	-
	-
	_
분기별	-
<u>.</u>	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20조(학교폭력의 신고의무) ① 제20조(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등)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 ① ------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 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 <u>사기관 등-----</u>

제15조의2(학교폭력 예방 홍보영 상의 제작・배포・송출) ① 교 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,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등에 관 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 송법 |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 ② 교육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 사업자(이하 "지상파방송사업 자"라 한다)에게 같은 법 제73 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 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 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 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 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.

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-----.
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 하여 진행 중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폭력행위 제지, 가해학생· 피해학생의 분리
- 2. 긴급치료 필요 시 학생의 의료기관 인도